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야구장부지) 지정 해제 청원』에 대한

검 토 보 고 서

1. 청 원 자 : 55명

○ 구미시 광평동 172-3번지 궁전빌라 304호 이성수의 54명

2. 소개의원 : 구미시의회 김정곤 의원

3. 청원사유(내용)

○ 청원인들의 소유토지인 구미시 광평동 221번지의 59필지의 토지는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나, 1978. 12. 21일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부지로 최초 결정 고시된 후 33년이 경과 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관련기관 및 구미시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없어 청원인들의 재산권 침해로 인해 조속한 시설부지의 지정해제를 요구함.

4. 참고사항

○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 결정 현황

- '78.12.21 : 도시계획시설 최초 결정(79,149m²)

(경상북도 고시 제276호)

- '87. 2. 7 : 도시계획시설 변경(확장) 결정

[79,149m² → 236,174m²(증 157,025m²)]

○ 세부시설 결정내용

용 도 별	면 적(m ²)	비 고
총 계	236,174	
주 경 기 장	36,000	시공완료
실내체육관	7,800	“
보조경기장	23,000	시공중 (‘12년 준공)
주 차 장	18,000	일부시공
도 로	37,000	“
녹지 및 기타	75,874	“
야 구 장	24,600	미시공
실내수영장	1,200	“
정 구 장	7,200	“
배 구 장	5,500	“

○ 시설부지 해제 민원제기

- '97. 3. 26. - 구미시 다수민원 제기(토지 소유자 이성수외 38명)
- '00. 8. 23. - 고충민원제기(청와대 비서실)
- '00. 10.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제기
- '04. 3. 29. - 구미시의회 청원(제4대)
- '11. 5. 27.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기

5. 검토의견

- 본 건은 구미시 광평동 172-3번지 궁전빌라 304호 이성수의 54명으로부터 접수된 「도시계획시설부지 해제 요청」 청원의 건으로서,
- 청원인들의 소유토지인 구미시 광평동 221번지의 59필지의 토지는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978.12.21. 고시 제276호로, 경상북도지사가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 부지로 최초 결정 고시한 후, 야구장 부지의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아 그동안 여러 차례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청원인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미집행된 야구장부지 등 도시계획시설 지정해제 및 그 대책을 요청하는 내용으로서,
- 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 부지 236,174㎡중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주차장, 도로, 녹지 및 기타 시설은 시공완료 또는 일부시공 중이며, 그 외 청원인들의 소유 부지에 야구장, 실내수영장, 정구장, 배구장 등 약 66,000㎡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복합체육시설 계획이나, 보상계획이 없는 실정임.
- 그리고, 본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 부지는 전체결정고시 면적 중 약 70%가 이미 집행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2020. 6.30일 까지) 적용 대상은 아님.
- 따라서, 청원인들의 장기적으로 미조성된 체육시설부지에 대하여는, 2012년 구미시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사업의 필요성, 주변환경, 접근성 등 입지여건을 면밀히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청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므로,
- 「구미시 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2항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되므로, 본회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의(附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야구장부지) 지정 해제 청원』

의견서(안)

1. 처리기관 : 구미시장

2. 관련 법

가. 「지방자치법」 제76조

나. 「구미시 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 2항 1호 및 제12호

3. 의견내용

구미시 광평동 221번지의 59필지, 청원인들의 토지는 당초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1978년 12월 21일 제276호로 경상북도지사가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 부지로 최초 결정 고시된 후, 3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야구장 부지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아, 다수민원 발생 및 청원인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본 청원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여, 위 관련법 및 규칙에 의거 구미시장에 이송 처리할 것을 의결한다.

다 음

- 청원인들의 장기적으로 미조성된 체육시설부지에 대하여, 2012년 구미시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사업의 필요성, 주변 환경, 접근성 등 입지여건을 면밀히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청원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향후 시설부지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2. 3.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